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안 번호	152
----------	-----

제출년월일 : 1996.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므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재정운영계획및 결산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임.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표준안(내무부)

기타참고자료(별첨)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의회의 결산 승인후)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도지사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도지사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 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표준(안)
【 내무부 재정13300 - 472(96. 6.18) 】

지방화로 세계화로 고향발전 나라발전

내 무 부

우110-760 /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 731-2410 (행) / 전송 2417 담당:

문서번호 재경13300 - 442

시행일자 1996.06.18. (준영구)

받음 수신처참조 (국)

연결	담당관	du	지	
접	일자 시각	1996. 6. 19	시	
수	번호	49 (49)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기

제목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기본지침 및 조례준칙 통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이의 시행을 위하여 공개기본지침 및 조례준칙(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시·군·구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기본지침 1부.
2. 조례준칙(예시) 1부. 끝.

내 무 부 장

수신처 : 나01-06, 10-18.



地方財政運營狀況住民公開基本指針

内 務 部

< 導 人 背 景 >

- 그간 내무부에서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승인등 각종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4.12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였음

地方財政運營狀況 住民公開基本指針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根 據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基本方針

- 주민공개시는 조례로 정하여 운영
- 주민공개는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
- 공개대상은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공개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공개
- 공개방법은 서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 細部指針

가. 公開對象

상 반 기 (2월)	하반기 (결산승인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별 세입현황 · 세출예산현황 < 주요사업조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예산현황 · 각종 보조사업 예산현황 ○ 당해년도 주민부담예정액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등 ○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부담행위, 차입금 · 지방채, 차관등 ○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취득 처분계획 ○ 당해년도 지방공기업 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 ○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주요사업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 결산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목별 수납상황 · 세출예산 집행상황 < 주요사업결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예산현황 · 각종 보조사업 예산현황 ○ 전년도 주민부담상황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등 ○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부담행위, 차입금 · 지방채, 차관현황등 ○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 전년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 ○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공개대상자료는 자치단체실정에 맞게 작성 공개

나. 公開方法

- 다중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 "에" 공보, 리후렛, 지역일간신문게재등
-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 읍면동 행정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다. 住民公開의 制限

-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 기타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사항

라. 住民公開事務의 擔當體系

- 총괄부서 : 시 · 도 - 예산담당관실
시 · 군 · 구 - 기획실(예산담당부서)
 - ※ 주요기능 :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계획 수립 및 운영
- 공개시기별 책임부서
 - 상반기 : 시도 - 예산담당관실, 시군구 - 기획실(예산담당부서)
 - 하반기 : 시도 - 회계과, 시군구 - 회계과(재무과)
- 공개정보생산 및 관리부서 지정운영
 -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 예산부서
 -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 예산부서
 - 주민부담상황 : 세정부서
 - 지방채 채무관리상황 : 예산담당부서
 - 기금운영계획 : 예산부서
 -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 재산관리부서
 -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 공기업담당부서
 - 전년도의 결산개황 : 회계부서

□ 行政事項

가. 住民公開條例 및 規則의 制定運營

- 본 지침을 근간으로 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운영

※ 조례안 예시 : 별첨

나. 地方財政住民公開計劃의 樹立·公開

- 자치단체별로 매년 지방재정주민공개계획을 수립
 - 상반기(2월)에 공개되는 재정운영상황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 하반기에 공개되는 재정운영상황은 의회승인후 즉시 공개
 -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신임단체장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
- 총괄부서는 각 부서에서 생산된 정보를 종합정리하여 확정공개

○○광역시(도)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의3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시장(도지사)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제한) 시장(도지사)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도지사)의 권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도지사)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